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3가단12772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피고B

변론 종결2024. 5. 23.

판결 선고2024. 6. 27.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20. 3. 27. 체결된 증여계약은 38,562,19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8,562,19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

- (1) C는 2009. 7. 19.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던 중,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였다.
- (2) D 주식회사는 2014. 8. 4. E 주식회사에게 C에 대한 위 신용카드 대금채권을 양도한 후, 2015. 11. 24. C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 (3) E 주식회사는 2016. 5. 20. F 유한회사에게 C에 대한 위 신용카드 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위임을 받은 F 유한회사는 2016. 5. 30. C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 (4) F 유한회사는 2019. 6. 20.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신용카드 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위임을 받은 원고는 2019. 7. 8. C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 (5)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소499931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2. 10. 12.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36,079,469원 및 그 중 11,986,700원에 대하여 2022.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 (6) 위 판결에 기한 양수금 채권은 2023. 5. 2. 기준으로 원리금 합계 38,562,192원 및 그 중 11,986,700원에 대하여 2023.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나. C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 (1) C는 부(父)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 중 1명으로서, 망인이 2020. 2. 1. 사망하자, 2020. 4. 6. 망인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4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남편인 피고에게 2020. 3. 27.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2)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전원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20. 6. 22. H에게 2020. 6.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토지 및 건물 매매 거래가액 894,000,000원), 같은 날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I조합,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말소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98,383원이었다).

다. C의 채무초과상태

C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인 2020. 3. 27.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를 비롯하여 J카드, K카드, L카드, M은행, N카드에 대한 각종 채무로 원금 합계 65,356,700원 및 이에 대하여 상당한 액수의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4 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O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I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는 C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으로서 38,562,192원 및 그 중 11,986,700원에 대하여 2023.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채권을 갖고 있는바,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적법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바,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C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6. 12. 10. C의 부(父)이자 장인인 망인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2020. 2. 1.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 중 C에게 상속된 1/4 지분을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변제조로 증여받았던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를 해한다는 의사는 없었으므로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 의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①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가 C로부터 그가 상속으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을 증여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진다는 것일 뿐 C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다는 것은 아닌 점, ② 피고는 2016. 12. 10. 망인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을 제1호증)을 제출하였으나 그 대여일자 및 차용증 작성일인 2016. 12. 10.을 전후하여 피고가 망인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피고가 제출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1) 에도 피고가 위 날짜에 100,000,000원을 인출하였다거나 이를 망인에게 입금하여 주었다는 내용은 없다), ③ 피고는 C의 남편으로서 C의 채무초과상태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반복하고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및 범위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로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의 경우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전득자가 취득한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진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 중 C 지분 1/4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피고에게 이전되었다가 H에게 처분되었고 그 처분 직후 I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1/4 지분에 관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고, 그 취소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으로서 피고가 H에게 매도한 매매대금인 223,500,000원(=894,000,000원×1/4)에서 말소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액 24,595원(=98,383원×1/4, 원 미만은 버림)을 공제한 나머지 223,475,405원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38,562,192원(2023. 5. 2. 기준) 중 더 적은 금액인 위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위 38,562,19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8,562,19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철환

별지